



# 인천광역시

생활속 거리두기  
새로운 일상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알림

1. 인천광역시 범무담당관-6581(2020.5.29)호와 관련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내용 :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증액 (30만원→50만원)
- 공 포 일 : 2020. 6. 2(화)

붙임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끝.

## 인천광역시



수신자 법인택시조합이사장, 개인택시조합이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교통과장), 인천광역시 옹진군수(경제교통과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교통과장), 남동구청장(자치과(교통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교통정책과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교통운수과장), 계양구청장(교통민원과장)

주무관 이정숙 택시관리담당 은윤희 택시화물과장 전결 2020.6.1. 김정범

협조자

시행 택시화물과-8499 (2020. 6. 1.) 접수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택시화물과 (구월동) / <http://www.incheon.go.kr>

전화번호 032-440-3828 팩스번호 032-440-8669 / [lhjss@korea.kr](mailto:lhjss@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인천시가 파잉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합니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전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증액에 관한 사항  
(별지 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

2020년 6월 2일

인천광역시조례 제6400호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 고
1. 무면허 개인택시	500,000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000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20,000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500,000	
5. 택시 승차거부 행위	50,000	
6. 택시 부제 위반행위	50,000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50,000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300,000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500,000	